

국토교통부 공고제2022-1220호

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- 가. 공시대상 :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
- 나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22년 6월 1일
- 다. 공동주택수 : 119,255호
(아파트 99,859호, 연립 3,609호, 다세대 15,787호)
- 라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
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·군·구에서 열람)
- 마. 열람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

2. 이의신청방법

- 가.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- 나. 이의신청은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,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